

NH Bank legal brief

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논의 동향

2022. 11. 17.

- □ '22. 11. 14. 개최된 「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」에서는 은행법 개정 관련 금산 분리 제도 및 업무위탁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.
- □ 금융위는 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·심의할 예정입니다.
- □ 본 리걸브리프에서는 위 은행법 개정안의 2大 주요 이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, 이에 대한 당행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.



□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

- o (현행) 은행이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출자 방식으로 비금융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(은행법 §27의2, §28).
- o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, 금융회사가 **부수업무로써, 또는 자회사 출자를 통해 영업** 가능한 비금융업무의 범위에 대한 3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

	개선 방안	신 속 성 ¹⁾	유연성 ²⁾	자율성 ³⁾
1안	영위 가능한 비금융 업종을 열거(=기존방식), +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	0	×	×
2안	업종 불문하고 비금융업 영위를 허용,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업종(건설업, 제조업 등)을 열거 하고 위험총량 한도*를 설정하는 방안 *부수업무 비중 한도, 자회사 출자 한도 등	×	0	Δ
3안	부수업무 범위 - <u>1안 적용</u>	0	×	×
	자회사 출자 - <u>2안 적용</u>	×	0	Δ

- 1) 신속성: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만으로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추진 가능
- 2) 유연성: 향후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도 법령 개정 등 별도 조치 없이 비금융업 영위 가능
- 3) 자율성: 금융기관이 영업할 수 있는 비금융 업종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

ㅇ 시사점 및 대응 방안

- 은행권에 가장 유리한 개선 방안은 [2안]
 - 향후 기술의 발전 및 금융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규제 방식
 - 금지 업종 외의 범위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보장
 - 다만,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여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단점
- 금산분리 제도는 위 3가지 중에서 적어도 1안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당행은 <u>비금융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제2안 지지 의견을 유지</u>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제1안 이 채택될 것을 대비하여 당행이 <u>영업을 희망하는 비금융 신규 업종을 사전에 검토</u>하여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


□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

-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업무위탁 제도 관련 ① 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방식, ②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·감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
 - ① 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관련

현 행		개선 방안		
		(제1안) 본질적 업무를 '핵심업무'와 '비핵심업무'로 구분,		
은행의 제3자에 대한		→ 비핵심업무는 위탁 허용		
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		*핵심업무: 대출여부의 판단 등		
(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§3①)		*비핵심업무: 신용조사, 담보물 평가 등		
		(제2안)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		
		일부 업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위탁 금지		

- ②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·감독
 -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·감독 의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
 - 감독당국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 검사권한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
 - (1안) 감독당국이 수탁자를 직접 조사, 계약해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 - (2안) 감독당국의 직접 검사권한 신설 없이, 은행의 관리책임으로 남겨두는 방안

ㅇ 시사점 및 대응 방안

-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해주겠다는 전제 하에서 그로 인한 "리스크의 관리·감독"에 중점을 두고 검토
 - 특히,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처럼, 위탁자인 금융회사가 더 이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아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·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등 고려
-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, <u>당행 자체적인 업무 수탁자에 대한</u>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. 끝.